

CONTACT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
@leeko.com

변호사 차현정

T: 02.772.5971

E: hyunjeong.cha
@leeko.com

변호사 한경원

T: 02.6386.7924

E: Kyungwon.han
@leeko.com

수석전문위원 조성인

T: 02.6386.0739

E: sungin.cho
@leeko.com

전문위원 정원식

T: 02.6386.0870

E: ws.jung
@leeko.com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자율보안 토대 마련

금융위원회는 2024. 2. 1.자로 규정변경을 예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2025. 2. 5.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 ·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 ·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배경, 원칙 중심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하에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

1)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확대(§23③)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 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 · 운용할 의무를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은행,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신용카드업자, 보험회사 등	(i)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 (iii)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다만, 해당 규정은 물적설비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26. 2. 5.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위원 이정훈
T: 02.6386.1966
E: junghun.lee@leeko.com



전문위원 김시홍
T: 02.6386.0756
E: sihong.kim@leeko.com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50, 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보상한도의 금액을 합하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최대로 합니다.

-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5억원 → 10억원
-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1억원 → 2억원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은행,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외): 1억원 → 2억원

또한, 금융회사가 명시된 보상한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최저 보상한도 ‘이상’으로 책임이행보험등에 가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보험 가입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26. 2. 5.부터 시행됩니다.

3) 침해사고, 전자금융사고 관련 보고의무(\$37-4, \$37-5)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기존에 전자금융사고 보고에 관하여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제37조의5로 이동하여, 사고보고 위반시 법률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보고대상인 사고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변경 내용
전산업무 중단·지연 관련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 지연·중단 시간이 10분 이상인 경우 그 외: 지연·중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에서 완화
보고 제외대상	1개 영업점 장애, 단순 정보 제공 시스템의 장애,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장애 피싱/파밍, 매체 위변조 등으로 발생한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내지 ‘전자금융사고보고 유의사항’의 내용을 시행세칙에 반영

2.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8-20)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보안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부서만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 강화에 힘을 쏟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은 금융회사의 내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 8. 5.부터 시행됩니다.

3.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제 개선 및 자율성 강화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i) 건물, 설비, 전산실 관련 규정(§9, 10, 11), (ii) 악성 코드 및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관련 규정(§16, 17), (iii) 직무분리 관련 규정(§26), (iv) 사업추진, 계약, 감리 관련 규정(§20, 21, 22), (v)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관련 규정(§30), (vi) 비밀번호 설정 방식 관련 규정(§32, 33) 등 관련하여, 지엽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각종 대책, 기준, 절차 등을 수립·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통제 등 일부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 별도의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관련

금번 규정 개정은 자율보안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융회사가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안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자율보안-결과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24년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도 3단계 추진과제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령을 통해 주요 보안 원칙·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기술적 보안 통제사항은 가이드로 모범사례를 제시할 예정이고, 금융회사로서는 업무환경, 인프라, 보안역량 등에 대한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통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산사고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가 규정만 준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변화되는 사이버 위협, 발전하는 IT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금융보안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율보안체계로 전환되는 디지털보안 법제에 관하여 규제 변화를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며, 자체적인 보안체계를 수립·이행하고 점검하는 등 새로운 금융보안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에 대하여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뉴스레터 링크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